

## 1. 防災關聯法規 改正

### 가. 建築法的 改正

法律 제 3558 號로 改正된 建築法이 1982年 4月 3日 公布되어 防災研究部에서는 改正 法律의 事本을 본지부에 送付한바 있으며 그 중 安全點檢 實務과 밀접한 關聯이 있는 部分을 발췌하여 轉載한다. 특히 建築法 제 2조 제 3호의 「特殊建築物」의 用語에 대한 定義가 삭제되었으나 同法 施行令에서 「特殊建築物」이란 用語가 빈번히 引用되고 있으므로 建築法 施行令의 改正, 公布時 까지 點檢과 關聯하여 特殊建築物이란 用語를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을듯 하다.

改正建築法 新·舊 對比表

조 항	舊	新
제 2조 제 7호	“主要構造部”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重要部分을 이루는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主階段,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말한다.	“主要構造部”라 함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間壁, 셋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遮陽, 屋外階段,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建築物의 構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部分은 제외한다.
제 23조 의 2	(特殊建築物等の 內裝) 제 2조 제 3호의 規定에 의한 特殊建築物(火葬場, 屠殺場, 塵埃 및 汚物處理場은 제외한다) 및 5층 이상인 건축물의 屋內 部分의 內裝은 大統領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防火上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建築物의 內裝) 5층이상인 建築物, 醫療施設, 宿泊施設, 販賣施設, 觀覽集會施設, 慰樂施設, 共同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의 屋內部分의 內裝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防火上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간이하론소화용구 규정(내무부 고시 제 4호)

現 消防法 施行令 제 26조의 規程에 의하여 國家檢定을 받아야 할 消防用機械器具중 泡沫消火器와 消火藥劑를 使用하는 簡易消火用具는 除外하게 되어 있으나 할로젠化合物에 의한 消火藥劑의 開發이 눈부시게 進歩하고 있으며 그 消火性能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할로젠化合物을 藥劑로 한 消火器가 널리 보급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에 內務部에서는 할로젠化合物을 藥劑로 使用하는 簡易消火用具에 대한 製造 및 性能에 대한 最小限의 基準을 制定한 것으로 思料된다.

간이하론소화용구 규정은 全文 6條(既送付한 規程사본 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조에서 「간

이하론소화용구는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스프레이식으로 방사하는 기구로서 檢定規則에서 定하는 1 단위 以上の 消火器를 除外한 소화약제의 重量이 700 g 미만인 것을 말한다」로 定義되어 있다.

제 2 조에서는 消火用具의 容器에 대한 規定이 나와있고 제 3 조, 4 조에는 消火用具의 性能試驗과 방사시험, 제 5 조에는 消火藥劑에 대한 規制, 제 6 조에는 消火用具에 表示해야 할 事項등이 나와있다.

#### 다. 改正 「안전점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업무규정」

— 內務部 訓令 제 705 號 (82. 2. 11) —

1981年 4月 4日 消防法 改正에 의해 同法 제 6 조 消防검사에 대한 特例가 삭제되어 당 協會의 安全點檢이 消防檢査에 代身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內務部 訓令 제 610 號의 제 4 조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는 點檢의 범위」에 대한 規定이 따라서 삭제되어 훈령 제 705 號로서 公布(82. 2. 11)되었으며 제 4 조 以外の 다른 부분은 變動이 없다.

다음은 改正된 訓令의 全文이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의한 한국 화재 보험협회(이하 "화보"라 한다)의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안전점검결과처리의 신속, 적정을 기함으로써 화재예방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화보 및 화보의 안전점검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방관서와 지방자치 단체에 적용된다.

제 3 조〔안전점검규정 및 점검기준작성〕 화보는 점검규정 및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삭 제〕

제 5 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및 통보〕 ① 화보는 매년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 12월 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화보가 보험계약갱신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반기별로 반기개시 1개월전에 대상별·월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계획서를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방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대상별·월별 소방검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화보의 안전점검은 방화안전관계법령(소방법·전기사업법·건축법·교압가스안전관리법·열관리법 등) 및 점검기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물의 관계자(점검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화보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1월 이내에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화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과 화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안전점검결과의 통보〕 ① 화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화안전관계법령상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 1 호서식